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22.7.21)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용지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특례를 허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특례 대상 지역·지구 확대(안 제8조의4)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용지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특례가 허용되는 지역·지구로 포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공급촉진지구를”을 “공급촉진지구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다만,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을”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4(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법 제7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u>공급촉진지구</u> 를 말한다.	제8조의4(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 ----- ----- ----- ----- <u>공급촉진지구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다만,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을</u>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663